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0010057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0.11.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8.02]

인터넷 주소
www.sodamnoodle.com
대표 이메일 주소
bezzang1@empas.com

[소담비빔국수]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태강에프앤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태강에프앤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02]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577-018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754-021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1577-018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태강에프앤씨	소담비빔국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02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4.28	2011.04.28	김 학 수	1577-0180	031-754-0214
	법인등록번호	110111-4592097	사업자등록번호	215-87-53508	

[2011. 04. 2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 /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자 (사내이사)	(주)태강에프앤씨 / 김 학 수	소담비빔국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02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학 수	1577-0180	031-754-021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소담비빔국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소담비빔국수』	-
상 호	『소담비빔국수』 _____ 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 40-1799393 (2021-11-15)
상표(서비스표)		등록 40-1799392 (2021-11-15)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84,021	53,839	130,181	419,610	-109,320	-104,209
2022년	306,045	87,283	218,762	534,776	73,978	88,581
2023년	377,026	149,556	227,470	492,467	8,501	8,707
☞ 위 재무상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2) 당사는 [소담비빔국수]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금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학수	사내이사	2021. 12. 31 ~ 현재	사내이사	회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등록권자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 2020-07-22 등록 2021-11-15	출원 40-2020-0127661 등록 40-1799393	(주)태강 에프앤씨	2031-11-15
	출원 2020-07-22 등록 2021-11-15	출원 40-2020-0127698 등록 40-1799392	(주)태강 에프앤씨	2031-11-15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9년 11월 30일

2. [소담비빔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태강에프앤씨	소담비빔국수	황충언	2009.07.20 ~ 2011.04.2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6-11
(주)태강에프앤씨	소담비빔국수	황준호	2011. 04. 28 ~ 2021. 12. 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02
(주)태강에프앤씨	소담비빔국수	김학수	2021. 12. 31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02

3.[소담비빔국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소담비빔국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비빔국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소담비빔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	14	-	16	16	-	16	16	-
서울	4	4	-	3	3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6	6	-	9	9	-	10	10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2	2	-	2	2	-	1	1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소담비빔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2	6	-	4	1	14
2022년	14	4	-	2	-	16
2023년	16	2	-	2	-	16

6. [소담비빔국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개/천원 , 부가세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16	284,015	9,345	688,315	17,207	86,660	3,787	14곳 산정
서울	2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0	367,323	9,917	688,315	17,207	189,607	5,271	9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	-	-	-	-	-	-

☞ 위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각 가맹점별 POS 매출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총 16개 가맹점 중 6개월 미만 운영 가맹점인 테크노벨리점, 동탄하이페리온점을 제외한 총 14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소담비빔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소담비빔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6	1,692일

* 위 평균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오픈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소담비빔국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말 『소담비빔국수』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근거는 별첨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4,260	 (비공개)	-	
광고	소계	 (비공개)	4,260 (판촉비 포함)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성남지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	031-742-005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소담비빔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56,100(천원)](부가세 포함, 49.587m² 기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	-	-	-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5,5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비용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교육 및 훈련비	2,200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해당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7,7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5,500
교육 및 훈련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47,850]	3,190	-	-	49.587㎡ (약 15평)기준
필수설비 (정착물)	냉각기, 배수구, 냉장고, 집기류, 의/탁자	자율	18,150	1,210	개별 협의	설치전 계약취소	-
인테리어, 간판 (점포 내장공사)		자율	27,500	1,833		공사전 계약취소	귀하가 업체를 선정 하여 시공할 경우 설계 감리비조로 평방미터 당 20만 원(부가세 별도)을 당사에게 지급.
상품, 원부재료 (필수공급품목)		가맹본부, 협력업체	2,200	-		상품 미공급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

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검수 대가 등으로 평당 금 이십이만원 (₩220,000원/ VAT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협력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냉난방기, 스피커, 철거비용, 익스테리어,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외 배관공사, 가스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소방, 화장실공사, 테라스, 포스 사용료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소담비빔국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분할 납부 :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해당없음	-	-	-	-	-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판촉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 훈련비	당 사	50/1인당	교육 2일전	-	소멸성 비용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점 사업자 임의선정	3,300 (기본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계약 전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냉각기, 배수구 이외의 시설, 기기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 임의 선정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계약 전 취소	-	-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점 사업자 임의선정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POS 사용료	가맹점사업 자 임의 선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POS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사항
지연이자	해당없음	-	-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전년도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처리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원 부자재, 제품 및 상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원 ·부자재, 제품 및 상품의 보관상태, 신선도 유지 상태 등 점검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	타사제품 취급, 운영매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훈련 등 점검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	-	-
추가 교육비	협약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약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소담비빔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200,000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상품은 당사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단,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그 가격을 정합니다.

- ⑥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소담비빔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소담비빔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비빔국수, 골뱅이국수, 고기국수, 잔치국수, 돈까스, 만두류 등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2.16. 기준)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비빔국수	8,000	잔치국수	6,000
골뱅이국수	9,500	어묵국수	7,500
동치미국수	8,000	돈잔국수	8,000
돈비국수	9,500	완탕국수	9,000
수육국수	9,500	국수곱배기 추가	1,000
서리태콩국수	8,000	통등심돈까스	9,000
사골떡만두국	9,000	육개장칼국수	9,000
낙지돌솥	9,500	돌솥비빔밥	9,000

제육돌솥	11,000	고기/김치만두	6,000
녹두빈대떡	6,000	갈비만두	6,000
구름탕수	13,000	철판불고기	11,000
소주	4,000	맥주	4,000
음료	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국수류를 판매하는 한식 서비스 업종	소담비빔국수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적인 경우 : 약 직경 500m 단, 계약체결시·계약체결 이후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설정한 영업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철, 병원, 시장 등 특수상권과 철길, 왕복8차선도로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지역으로서 당사가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변경)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게 사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소담비빔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
○ [소담비빔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담비빔국수』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4조[영업개시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1호
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2호
3.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1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상품]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3호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4조[상품 등 대금의 결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4호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5호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8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9호
10.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제32조 제1항 제10호
11.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11호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즉시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3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3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33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39조 제1호
○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39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소담비빔국수]와 동종의 영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2년 동안은 [소담비빔국수]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점포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당사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소담비빔국수]와 동종의 영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국수, 돈까스, 만두류 등 관련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소담비빔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 : 00 ~ 22 : 00 (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월22일 이상 개점 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의 :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비고
매장 청결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친절도 (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품질 관리 (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소담비빔국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상품광고) 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브랜드 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 하가 20%	증정상품 출 하가 80%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 비용 20%	판촉물 제작 비용 80%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 임의 시행: 가맹점사업자 전액 부담		1개월 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 -> 가맹본부가 승인 요청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 개별행사 시행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렛 . 전단 . 리플렛 . 카달로그 등의 최초 제작비용 및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상품)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제32조와 제33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소담비빔국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 즉시해지 되는 경우 당사에 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 ⑤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9.587㎡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7일 내외	8~9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등공사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D-24~5(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
최초상품 공급	- 초도 물류 공급	D-1(1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소담비빔국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메뉴 조리, 테이블 세팅, 고객 응대, 위생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친절 교육, 마케팅교육, 판매 촉진방안 등	집단 강의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소담비빔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시간	2,200(가맹금내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3시간	50/1인당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사는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당사는 운영 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2022-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예금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77-018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sodamnoodle.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